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05
----------	-------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권향엽 · 이주희 · 문진석  
박용갑 · 염태영 · 이기현  
장종태 · 김 윤 · 채현일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사, 그 밖에”를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정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직무수행 활동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30일 이후의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 안과 청원 등의 <u>심사</u>,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 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 ----- -----<u>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u>, 그 밖에----- -----.</p> <p>② <u>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2년 마다 의장에게 제출한다.</u></p> <p>③ <u>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정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한다.</u></p>